

국방부, 방위사업청, 병무청  
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관련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 
입법조사관 형혁규

Tel. 788-4553/Fax. 788-4559  
E-mail: hhk3000@nars.go.kr



# 요 약

## 질의 요지

- 국방부,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

(회답일 2016.12.08.)

## ■ 조사·분석 방향

- 국방부,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을 조사함

## ■ 주 요 내 용

-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대한 조사요구와 관련 국방부,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을 조사하여 회답함

# 목 차

1. 개요 .....	1
2. 국방부: 국방중기계획 .....	1
3. 방위사업청 .....	3
4. 병무청 .....	6

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.  
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개요

-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의무에 대한 조사요구와 관련 국방부,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을 조사하여 회답함

## 2. 국방부: 국방중기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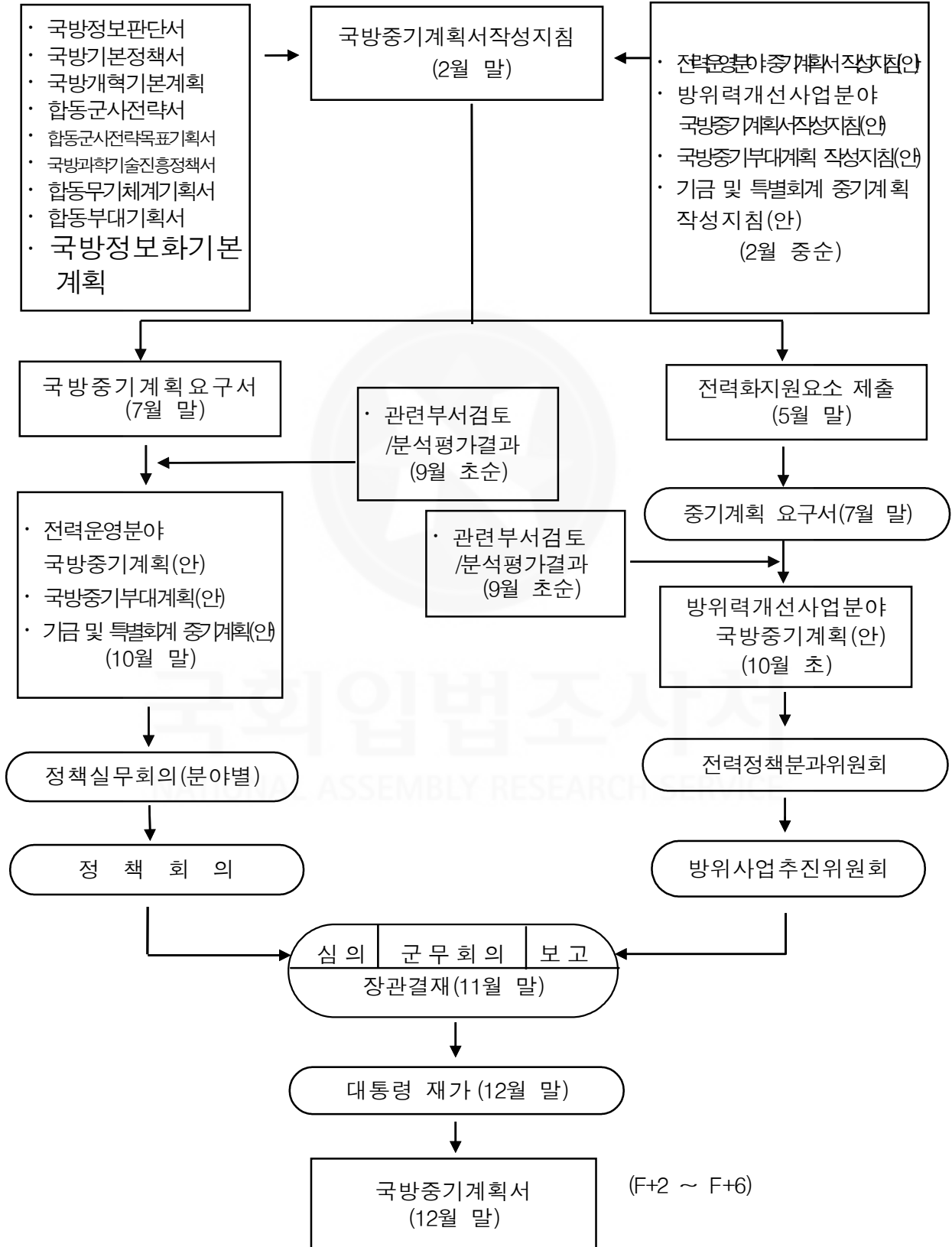
- 목적: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·유지에 대한 청사진(Vision) 이며,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, 예산편성의 기준 제공
- 근거법령: 「방위사업법」 제13조(국방중기계획 등)
  - 작성주체: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
  - 주요 내용: 방위력개선분야와 전력운영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연도별·분야별·프로그램별 재원을 배분
    - 방위력개선 : 전차, 함정, 항공기 등 무기체계 획득 분야
    - 전력운영 : 인건비, 장비유지비 등 부대운영유지 분야

### 제13조(국방중기계획 등)

- ①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(이하 "국방중기계획"이라 한다)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.
-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소요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작성절차: 「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」에 따라 작성

(그림 1)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



□ 성과에 대한 평가수단

-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별도의 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, 중기계획 작성 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(「방위사업법」 제13조제2항)
- 중기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정책환경 변화 및 연도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실시하지 못한 사업은 차년도 중기계획 작성 시 재검토하고 있음

### 3. 방위사업청

#### 1)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

□ 목적: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수립

□ 근거법령: 「방위사업법」 제33조(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)

- 수립주체: 방위사업청장(매 5년마다 수립, 1년 단위 보완·수정)
- 주요 내용: 방위산업육성의 기본정책,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,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구매,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,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, 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,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,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
- 수립 및 확정 절차: 「방위사업법」 제9조(방위사업추진위원회), 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20조(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), 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 제669조(기본계획 작성절차)에 근거,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·조정함

**「방위사업법」 제9조(방위사업추진위원회)**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....(생략)

11.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**「방위사업법 시행령」 제20조(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)**

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(이하 "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....(생략)

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 제669조(기본계획 작성절차)

- ① 방산진흥국장은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연도 2월말까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방산기술통제관실, 획득기획국, 사업관리본부 국과연, 기품원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.
-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작성지침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분야별 내용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4월말까지 방산진흥국장에게 통보한다.
- ③ 방산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통보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영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 협의를 한다.
- ④ 방산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기본계획안을 1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확정한다.

□ 성과에 대한 평가수단

- 기본계획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의 반기별 점검
- 근거법령: 「방위사업관리규정」 제669조의2(기본계획 이행관리)

## 2)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

□ 목적: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□ 근거 법령: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

- 수립주체: 방위사업청장이 5년마다 수립·시행
- 주요내용: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,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,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,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·분석·가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,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·운영시 지원에 관한 사항 등
- 수립 및 확정 절차 : 방위사업청장(방산기술통제관)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 수렴 후, 방위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

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
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

-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 
....(생략)
- ④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-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)

-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둔다.  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 
....(생략)

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」

제3조(종합계획의 수립)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

-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 
....(생략)

□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수단

- 법적으로 평가수단에 대해 명시된 것은 없으나,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단년도 시행계획 성과분석 과정에서 평가



#### 4. 병무청

- 「국가재정법」 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) 및 제28조(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)에 따른 계획 외에는 없음



국회입법조사처  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